

2016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2017 년 4 월 13 일



대표이사 이 원 중

목 차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
가. 총괄	1
나. 구성	1
1) 총괄	1
2) 구성원	3
다. 권한과 책임	3
1) 총괄	3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5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5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5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6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6
10) 기타	6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6
1) 의사결정 절차.....	6
2) 활동내역 개요.....	7

3) 회의 개최내역	7
4) 평가	8
2. 보수체계	9
가. 주요사항	9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9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9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9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10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10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10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10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10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10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0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11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1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11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11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11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11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12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12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12
나. 보수 세부사항	13
1) 임직원 총보수.....	13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13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3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3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4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15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15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16
6) 이연보수의 조정	16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17
첨부. 보수위원회 규정	18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었고,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에 제6조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안건,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총 3인 (조진완, 한동엽, 이원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조진완, 한동엽)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조진완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동업 사외이사는 하나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보수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 이전 (2016. 3. 29 ~ 2017. 3. 26)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 력
이원종	위원장	사외: ×, 위험관리: ×	금융전문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운제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
오재환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금융전문가	외환은행 강남영업본부장 역임

주 1) 2016 년도 보상위원회 개최(2016 년 3 월 28 일)시에는 조운제 사외이사가 보수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으로, 심재우 사외이사가 보수위원이었음 (2016 년도 보상위원회 회의내역에 반영)

- 2017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 력
조진완	위원장	사외: ○, 위험관리: ○	×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경영학)
한동업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금융 전문가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이원종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금융 전문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대표이사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진완	사외	위원장	`17. 3.27.	`18. 정기주주총회일
한동엽	사외	위원	`17. 3.27.	`18. 정기주주총회일
이원중	상임	위원	`15. 7. 1.	`18. 6.30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2 조 및 내부규정인 보수위원회규정 제 4 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7 년 3 월 27 일 개최된 2017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기준(안)' 설계에 대하여, 아래 보수의 세부정보와 같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7년 3월 27일 개최된 2017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보수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7년 3월 27일 개최된 2017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는 UBS 그룹에 경영권이 있는 합작법인으로서, 회사의 보수체계는 한국의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UBS 그룹이 설계한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UBS 그룹의 보수체계는 경영성과, 재무건전성, 위험관리, 준법감시 체계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매년 UBS 그룹 보상위원회 (UBS Compensation Committee)에서 공식 심의·의결하고 있어, 당사 보수위원회는 그 적법성과 투명성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절차가 적정하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연지급은 총 보수금액(기본급과 성과보수의 합)이 CHF/USD300,000를 초과할 경우 그 대상이 되며, 이연 기간은 3년~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현금 지급분과 이연 지급분 비율이 6:4이며, 이연 초기 지급분이 이연 기간별 균등 배분액보다 크지 않게 책정하여, 장기성과와 연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연지급 대상은 등기임원과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정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는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상기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수의 일부가 이연됩니다. 그 외,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이연하도록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 년 3 월 27 일 개최된 2017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보수위원회는 2017 년 3 월 27 일 개최된 2017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등에 대해서도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회사의 보수체계는 한국의 관련법규 하에, UBS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설계하고 철저한 관리로 운영하는 보수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위원회는 2016 년 연차보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및 운영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국내 회사 내 임직원에게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는 전 임직원입니다. 단,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7년 3월 27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6년도분으로 발생한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 중 이연지급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이연지급 의무대상이며, 임원 외 모든 직원들 중에는 성과보수액이 회사의 보수체계에 명시된 이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 이연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2016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2명이며, 보수위원회에서 이연지급 대상자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분 류	인원수	직 명
임 원	2 명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 최소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소집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토의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됩니다. 보수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6 년 3 월 28 일에 서면으로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이 보상위원회에서는 2015 년도 이사보수가 2015 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31 억원)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했고, 2016 년도 이사보수 한도도 2015 년과 동일(31 억원)하게 2016 년 정기주주총회에 건의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2017 년 3 월 27 일에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보수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16 년도 보상위원회: 2016. 3. 28. 서면회의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원중	심재우	오재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2015 이사보수 집행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3. 의결(심의)안건				
2016 이사보수 한도 (31 억 원)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상기 내용은 기존의 '보상위원회' 활동내역이며, 새로운 지배구조법에 따라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제 2017년도 제 1차 보수위원회: 2017. 3. 27 (월) 15:00 ~ 15: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진완	이원종	한동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가. 1 호안건 ²⁾ 보수체계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2016년도 보수의 결정 및 지급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특정 보고안건 없었음.
- 2)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사항
- 3) 2016년도 보수의 결정 및 지급
- 4) 2016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평가

회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보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는 신규 순유입자금 (Net New Money), 신규 순유입자금에 대한 운용보수 (Net New Run Rate), 보너스 차감 전 공헌이익 (Contribution Margin Before Bonus), 시장점유율 등으로 구성된 KPI 달성도에 의해 측정되며, 준법경영 등의 건전성 지표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회사 KPI 달성도, 담당 업무 목표의 달성도, 회사 및 부서에 대한 기여도, 인재관리, 상급자, 동료, 직원 등에 의한 평가 등으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고유의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평가와 다면평가, 라인매니저 평가로 구성되며, 모든 평가는 계량화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평가 시스템 (Performance Measurement & Management)

- Performance Goals(정량평가):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고객, 조직, 재무, 직무, 리스크 관리 등의 세부항목으로 수립, 평가함. 특히 개별 담당 업무에 따라 맞춤형 리스크 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평가함.
- Behaviors Goals(정성평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 및 윤리 의식을 Integrity, Collaboration, Challenges 항목으로 평가하며, 상벌 및 징계내역 등의 요소도 반영함.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조직별 경영목표 달성도, 개인의 평가 결과 및 기여도에 의거하여 개인의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문화에 기반하여 성과와 역량,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5년 동안 3회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지급 당일에 회사에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직 통보를 한 경우에는 성과보수 전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액 중 이연 보수액은 5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 보수액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재무성과 미달,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계, 손실 발생, 퇴직 사유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액이 이연기간과 배분율을 토대로 결정되며 각 지급시점도 결정됩니다. 이연보수의 지급확정은 각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UBS 그룹 보수위원회에서 환수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한 뒤 이루어집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재량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대비 성과보수 비율을 배분하는 특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의 성과보수 Pool,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 성과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성과보수액을 결정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즉시지급 분은 현금으로, 이연지급 분은 주식연계상품 등에 투자하여 지급확정시기에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약 40%를 이연하여 펀드 등 주식연계상품에 투자하며,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40%는 이연지급 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UBS 그룹 보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며, 회사의 보수체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회사는 직원들의 성과가 기본연봉과 성과급 (재량인센티브)에 연동되는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회사는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임금 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가치, 책임 수준, 경력 및 해당 직위의 시장 가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UBS 그룹의 선진화된 글로벌 보상체계를 회사의 보수체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과 투명성은 보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UBS 그룹은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관련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보수체계를 설계하여 UBS 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55 개국 65,000 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해당 사항 없음.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회사는 2016 년 9 월 8 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충족하기 위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은 성과보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연보수를 적용하고, 이연보수의 시기별 지급비율을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최초 지급하는 이연 보상이 기간균등 배분 금액보다 크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임원 외의 직원들은 회사의 보수체계에 명시한 이연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연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5 년)	99.9	153.9	65%	92	1.09
당해년도 (2016 년)	94.0	143.7	65.4%	85	1.10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임.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 이 아닌 t 로 기재했음. 해당연도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해당연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주 3) 보수총액에는 성과보수가 포함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 원 ¹⁾	직 원
전년도 (2015 년)	보수총액 ²⁾	15.4	84.5
	성과보수액	5.8	12.3
당해연도 (2016 년)	보수총액	14.6	79.5
	성과보수액	5.5	10.8

주 1) 회사 규모상 임원 및 직원의 각 직급별 보수 총액은 개인별 보수 총액이 드러날 수 있어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2) 보수총액에 성과보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주 1)	기본급 ^{주 2)}	성과보수액 ^{주 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5 년)	임원	7	9.6	4.19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16 년)	임원	6	9.1	4.60	1.8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주 1) 해당년도중 6 개월이상 근무한 임원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 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주 3) 성과보수는 해당년도분으로 발생한 성과보수를 반영하였음. 즉, 2015 년도 성과보수는 2015 년에 포함, 2016 년도 성과보수는 2016 년에 포함하였음. 기본급은 당해년도 실제 지급분이고, 성과보수는 당해년도분으로 발생한 금액 기준임

주 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으로 발생한 성과보수가 회사의 이연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없음.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성과 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상품 ^{주 2)}	기타 ^{주 3)}
전년도 (2015 년)	임 원	4.19	2.23	-	1. 96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6 년)	임 원	4.60	2.76	-	1.84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 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 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 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 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 1) 주 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 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 년)	임 원	1.96	-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16 년)	임 원	1.84	-	3.8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주 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2016 년도말 누적액에는 2015 년도 발생분 포함됨.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 3) 2015 년분과 2016 년분으로 발생한 이연보수액은 각각 2018 년과 2019 년부터 지급예정임.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 년)	임 원	1.96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16 년)	임 원	1.84			3.8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2015 년)	임 원	1.96	1.96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16 년)	임 원	3.80	1.84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 년(t 기) 발생분, 2015 년(t-1 기) 발생분, 2014 년(t-2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 2015 년도말에는 2015 년도에 발생한 이연보수액을, 2016 년도말에는 2016 년도 발생분 (지급미확정분)과 2015 년도 발생분 (지급미확정분)의 합계를 기재하였음.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작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 4)}
		축소액주 1)	직접적 조정주 2)	간접적 조정주 3)	
전년도 (2015 년)	임 원	해당 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6 년)	임 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은 없으며, 다만, 주가연계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연 보수액은 지급확정시점에 정확한 평가금액을 알 수 있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임원	발생하지 않았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6년)	임원	발생하지 않았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 관련 규정 (첨부): 보수위원회 규정

첨부

보수위원회 규정

2016. 9. 8.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각 위원에게 회의 최소 1주일전에 소집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임무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 ②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적용 받는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다.

제 5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 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토의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